

#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32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장학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재정비하여 안산시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.

## 주요골자

가.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시 장학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함.

(안 제6조제3항)

나. 당연직 위원으로 시 장학금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고, 시교육청 관리국장을 시교육청 장학금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함. (안 제6조제4항)

##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사전예고(결과)

- 입법예고 : 2005. 2. 22 ~ 2005. 3. 3 (10일간)
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## 기타 참고사항

#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중 “위원회에서 호선한다”를 “시 장학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”로 하고, 동조제4항중 “시교육청 관리국장”을 “시 장학금업무 담당국장 · 시교육청 장학금업무 담당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주민자치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주민자치과장 임 철 웅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교육지원담당 김 종 인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지숙 (행정 3452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 (심의위원회) ① ~ ② (생략)          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위원은 부시장·시의회 부의장·시교육청 관리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6조 (심의위원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----- 시  <u>장학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.</u></p> <p>④ ----- 시 장학  <u>금업무 담당국장·시교육청 장학금업무 담당</u>  <u>국장-----</u>  <u>-----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 (신설)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8조(회의 등) ①-----  <u>-----. 다만, 위원장이 사고가</u>  <u>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324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5. 3. 30.

제 안 자 : 의회행정위원장

## 1. 수 정 이 유

- 안산시 장학금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시 장학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율적인 위원회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,
-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의회 부의장을 삭제하고 시의원 1인을 포함하도록 수정함.

## 2. 주 요 골자

- 부위원장의 선출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수정함.(안제 16조제3항)
- 시의회 부의장을 당연직 의원에서 제외하고 시의원 1인이 포함되도록 수정함.(안제4조)

# **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 제3항 중 “부위원장은 시 장학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”를 “위원회에서 호선한다”로 하고,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원은 부시장·시 장학금 업무담당국장, 시교육청 장학금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<b>제6조(위탁) ①~② (생략)</b></p> <p>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장학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.</p> <p>④ 위원은 부시장·시의회 부의장·시 장학 금 업무 담당국장, 시교육청 장학금업무 담 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<u>위촉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<b>제6조(위탁) ①~② (원안과 같음)</b></p> <p>③ ..... <u>위원회에서</u> <u>호선한다.</u></p> <p>④ 위원은 부시장·시 장학금 업무 담당국장, 시교육청 장학금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<u>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⑤ (원안과 같음)</p>